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4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5. 1.

(주)마이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7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4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마이플
대표자	김창섭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8만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00억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유통방지 책임자 김창섭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4.01월

- 1:1의 문의게시판에 불법촬영물 의심 게시물 신고 접수 되면 자료 삭제 및 업로더제재(강력차단) 진행
- 파일썸 사이트 관리자 모드에서 검색 제한어 관리 및 해시차단으로 검색결과 없으로 나오도록 조치
- 주식회사 버킷 스튜디오 필터링 계약으로 불법 촬영물등 차단 등 DAN 필터링 및 24시간 인적 자원 모니터링 실시
- 파일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적용안내 공지완료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매주 월요일 주간 회의실시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인력의 인식 강화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경각심 고취



주식회사 마이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1. 관련

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3735(2021.11.16.,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대상 설명회 개최 알림)

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66(2022.1.11.,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안내)

2. 위 1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오니 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5.6 등

나. 기재사항

- 불법촬영물 등 신고기능,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운영관련 사항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및 그 외 추가교육 진행

주식회사 마이플

협조자

감사자

시행 파일선 운영팀 (2024. 01. 01) <http://www.filecun.com/>

우 06120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4. 영화빌딩 501호

전화 02-1600-6093 / 팩스070-4758-9379 / copyrightfilecun@gmail.com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https://www.filesun.com/info/privacy_report_center

·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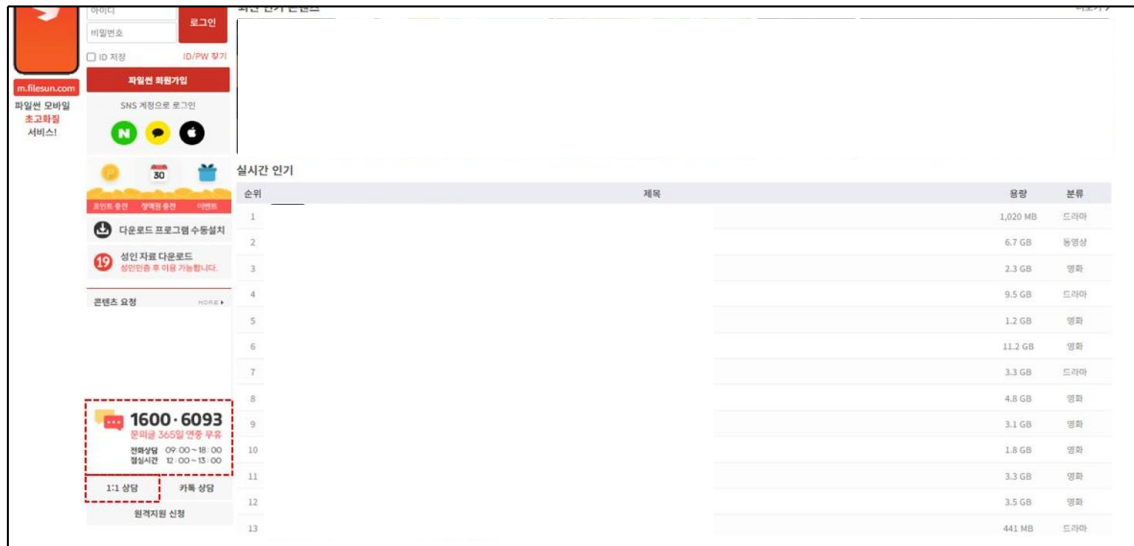


· MOBILE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불법촬영물 피해방지를 위해 고객센터 (1600-6093) 모니터링 요원 배치 중이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파일썬사이트 내 대표메일을 통해 상시 신고 가능.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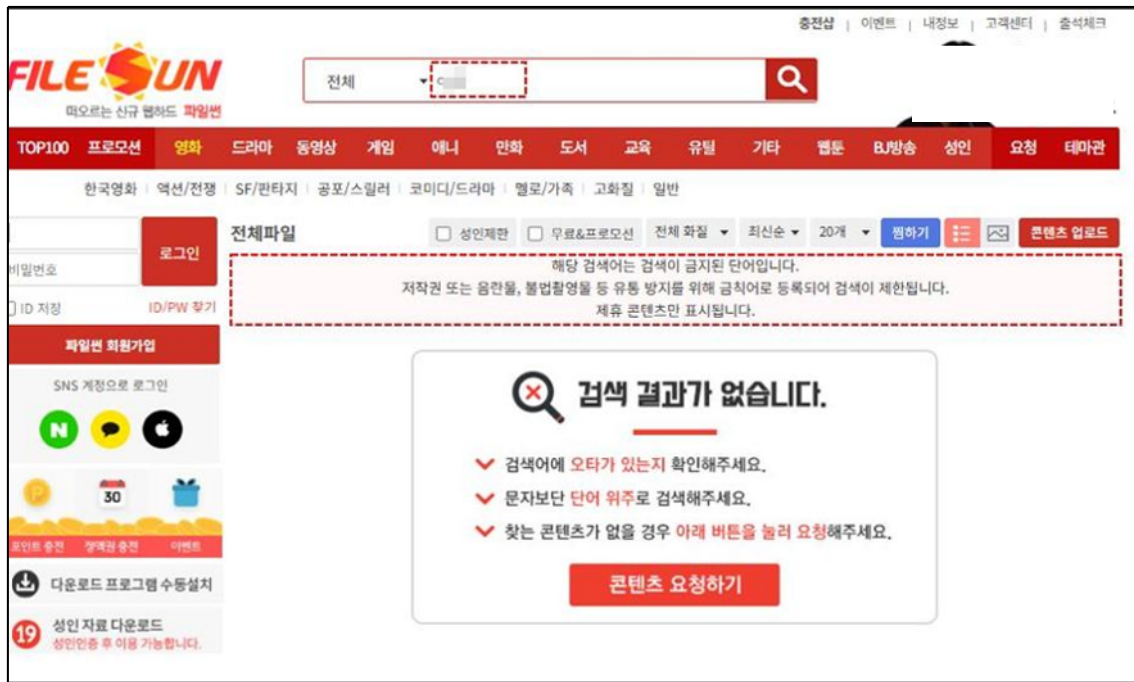
- 검색제한 유해단어 리스트

만화		미리보기	▶
성인		미리보기	▶
도서		미리보기	▶
기타		미리보기	▶
교육		미리보기	▶
유틸		미리보기	▶
애니		미리보기	▶
게임		미리보기	▶
동영상		미리보기	▶
드라마		미리보기	▶
만화		미리보기	▶
성인		미리보기	▶
도서		미리보기	▶
기타		미리보기	▶
교육		미리보기	▶
유틸		미리보기	▶
애니		미리보기	▶
게임		미리보기	▶
동영상		미리보기	▶
드라마		미리보기	▶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 MOBILE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filesun	유	루트키퍼,클라우드	
2	m.filesun	유	루트키퍼,클라우드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공지사항 등록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안내

공지사항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내

분류 : 작성자 : 파일명

2021년 12월 10일자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오니 콘텐츠 업로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파일썸에서는 불법촬영물 자체 모니터링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파일썸 내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콘텐츠 발견 시 즉시 1:1상담 및 고객센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파일썸이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콘텐츠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로그기록 보관

- 마이플 로그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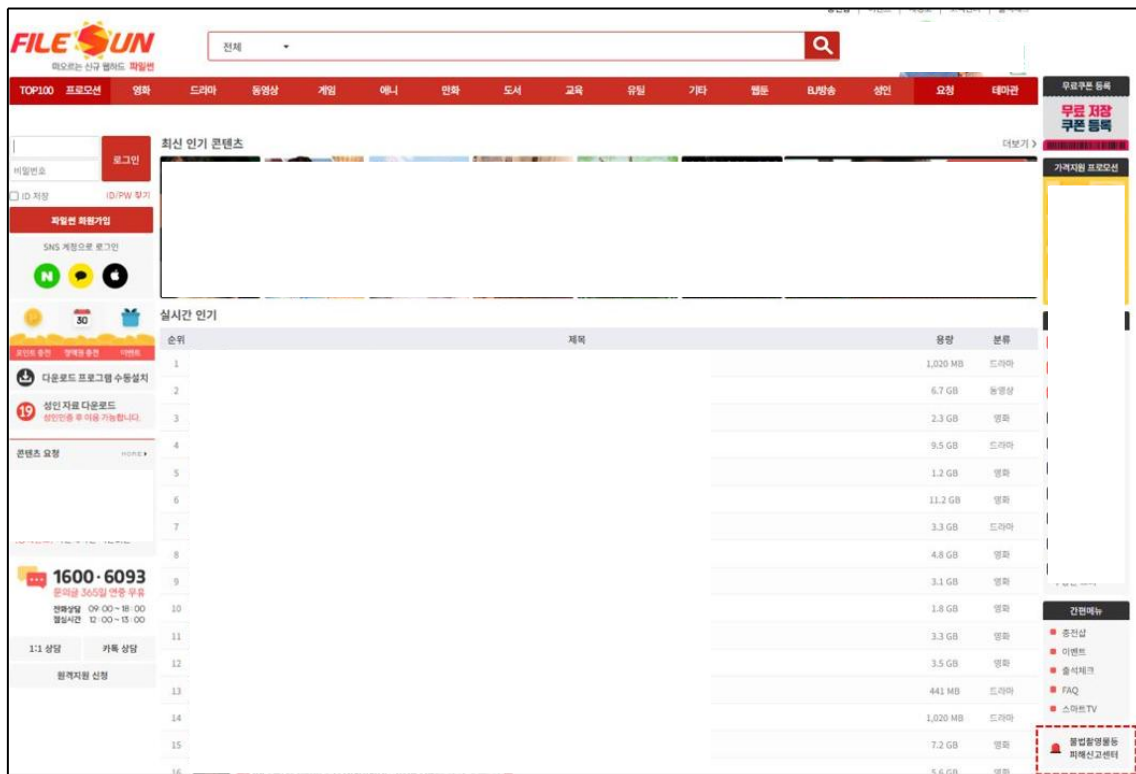
게시글번호	제목	파일명	날짜코드
115059302			19
115048608			19
115048272			19
115048203			19
114212729			19
114094150			19
114094101			19
114080526			19
113809786			19
113683067			19
113683009			19
113682958			19
113384595			19
113375369			19
113373488			19
113372466			19
113372116			19
113355480			19
113352130			19
113350298			19
113345339			19
113339954			19
113335935			19
113331494			19
113331318			19
113331290			19
113331220			19
113329707			19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파일썬 홈페이지』 하단에 “불법촬영물신고” 클릭하여 직접 접수도 가능



- 『파일썬 홈페이지』 배너 노출



- 『파일썬 홈페이지』 캠페인 현황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포함한 불법음란정보를 웹하드에서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인터넷 이용으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디지털 성범죄 영상 및 불법음란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음란물이 유포 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음란물 관련 신고는 1:1상담 및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4.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처리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	-	-	-	-	-	-	-	-	-	-	-
		각하·해당없 음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홈페이지 등록
-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에 제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ㄱ.설비의 보수, 증설 등을 위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ㄴ.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ㄷ.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회사는 매우 중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통지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수정, 중지 등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게시물)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9 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비제휴콘텐츠를 게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음란물을 게시하여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정지 7일
② 서비스 이용정지 30일
③ 영구이용정지 및 포인트 몰수

○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
- 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대한 신고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 또는 차단을 한다.
 - 단, 확인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해당 영상물에 대해 금치어 등록, 해시값 차단 조치를 해서 재발하지 않게 한다.
- ③ 불법촬영물을 등록한 게시자(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경고문구 등을 작성하여 쪽지를 전송하고 경고 처리를 취한다.
- ④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

피해 신고 접수 처리 과정

신고 접수 후 하단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01  침해 영상 신고

02  접수 및 확인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되도록 하고, 3년간 보관한다.
-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김창섭	관리팀	대표이사	2024-01-01
부	정경승	관리팀	과장	2024-01-01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4-08-26	불법촬영물	김창섭	2시간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4-12-11	불법촬영물	관리팀,운영팀	1시간	자체교육

발급번호 : 2024-il-051-0001

교육 수료증

성명 : 김창섭

소속 : ㈜마이플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4. 08. 26. ~ 2024. 08. 26.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 08. 26.



방송통신위원회